

[붙임1]

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계획 공고

- 방송통신위원회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미디어랩법)」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종편PP)의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허가대상사업

- 미디어랩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종편PP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(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)

2. 허가 신청 자격

-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미디어랩법 제12조(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), 제13조(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등)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

3. 서류접수 및 보정

- 허가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4. 1. 27(월), 09:00 ~ 1. 29(수), 18:00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제출서류 : 허가신청서(1부), 첨부서류(원본 각 1부, 사본 각 20부 및 CD 1벌)
- 접수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(☎ (02)2110-1271)

○ 허가 신청서류 보정

- 보정서류 제출기한 : 허가심사 전일까지
- 보정대상 :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및 방통위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허가 신청 법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

4. 향후 일정

○ 종편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심사결과 확정·공표 : '14. 2월말(예정)

※ 법정 심사기한 : 접수일부터 60일 이내(허가고시 제10조)

5. 허가 조건 및 허가장 교부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- 선정된 신청법인이 주주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허가장을 교부함

6. 유의사항 및 기타

-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-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※ 기타 허가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

※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. 끝.